

『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방위교육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설운영을 원활히 하고 필요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교육장 사용허가(안 제5조)
 -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구미시장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함
- 교육장 사용기준(안 제6조)
 - 교육장 사용은 주간 09:00~18:00, 야간 18:00~22:00로 함
- 교육장 사용허가의 제한(안 제7조)
 -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거나 시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및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
- 사용료의 납부(안 제9조)
 -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시는 추가 사용료 납부
- 사용료의 감면(안 제10조)
 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,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%를 감면

- 교육장 입장의 제한(안 제13조)
 - 전염성 질환자, 음주자,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- 권리의 양도금지(안 제14조)
 -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함
- 원상복구 및 안전관리(안 제17조)
 - 교육장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 중단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 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
 - 시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안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-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(수정가결)
 - 유·무선사용료, 행사용 의자, 강연대, 현수막 게첨료 등 부대 시설 사용료 폐지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장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1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교육장 위치, 용어정의, 사용범위를 규정하고
-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7일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, 교육장 사용시간 주간은 09:00~18:00까지, 야간은 18:00~22:00로 하였으며 사용허가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, 사용료의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였음
- 안 제10조 내지 제19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, 후원하는 행사는 50%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, 손해배상, 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별표 「시설사용료」 3가지 입니다.

① 강당사용료 기본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중 강당을 사용할 경우 기본시간을 대부분 2시간 단위로 기본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나, 우리시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과 동일하게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면서 사용료를 100천원 이상으로 유사하게 산정하였음
- 이는 강당사용을 2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2시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강당사용의 최소단위 기준시간을 「4시간」에서 「2시간」으로 조정하고
- 아울러 기준시간 조정에 따른 강당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② 강당사용 시간중 오후시간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강당사용 시간 기준을 오전은 "09:00 - 13:00" 오후는 "14:00 - 18:00"로 되어 있어 행사시간이 "13:00 - 14:00"경에 이루어질 경우 기본사용 요금이 오전과 오후의 금액이 상이하므로 오후시간을 "14:00 - 18:00"로 된 것을 "13:00 - 18:00"로 조정하여 오전 마지막 시간과 오후시간이 연결되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③ 냉·난방 기본 사용시간 및 청소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냉·난방 기본사용료가 「1시간」 기준으로 50천원 된 것을 「2시간」으로 기준시간을 조정하면서 기본 사용료도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교육장 청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리 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대강당, 로비, 내빈실,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비를 별도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1회 60천원의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

○ 그러므로 위의 재검토사항 3가지에 대하여 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